

전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111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지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111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96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삼오

피고, 항소인1. A

2. D

변론 종결2017. 1. 19.

판결 선고2017. 2. 9.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9679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김제시 F 대 714㎡에 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의 31, 32, 33, 34, 1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며, 위 (다)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내지 30,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하라. 원고에게, 2015. 1.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피고 A은 월 113,115원, 피고 D은 월 166,209원으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영표

판사이배근

판사김자림

별지